



EC의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I)

차례

1. 서언
2. 원산지 규정의 일반개요
1) 비율기준 검증
2) 세번변경 검증
3) 기술적 검증
3. 비특혜원산지 규정
1) 절 차
2) 실체법
4. 특혜원산지 규정
1) 절 차
2) 실체법
5. 반덤핑 측면의 원산지 규정
6. 기타 원산지 규정
7. 결론

1. 서언

원산지 규정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선별적인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완전히 개방된 국제경제라면 원산지 규정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무역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가 아니고, 무역제한 조치들이 무차별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한 원산지 규정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원산지 규정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다음 3가지

i) 차별적 보호조치의 확대, ii) 경제블록에 의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iii) GSP같은 무역 차별화 조치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원산지 규정을 자주 사용하는 주요 5개국(미국, EC, 일본, 호주, 캐나다)을 예

로 들어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검토되는 5개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한개이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들을 갖고 있어 더 더욱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게 인식되고 있다. (미국-6, EC-14, 호주-5, 캐나다-8)

2. 원산지 규정의 일반개요

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제품이 1개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는지와, 2개국 이상이 생산공정에 참여했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제품의 부품수급과 생산이 전적으로 1개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분명 그 나라의 원산지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원산지 문제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계되었을 경우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 개념은, 해당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일어난 최종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실질적 변형에 대한 검증 방법>

비율기준

(Percentage Criterion)

-1. 가격비율 기준

(ad valorem percentage)

공정기준

(Process Criterion)

-2. 세번변경

(Change-in-tariff-heading- CTH)

3. 기술적 검증

(Technical Test)

표1. 각국별 검증기준

국 별	비특혜 원산지	특혜 원산지
미 국	Technical test	Percentage : CTH or Percentage for U.S - Canada FTA
E C	Technical or Percentage	CTH
호 주	Percentage	Percentage
캐나다	Percentage	Percentage : CTH or Percentage for U.S - Canada FTA
일 본	CTH or Technical Test	Percentage

1) 비율기준검증(Percentage Criterion Test)

비율기준(Percentage Criterion)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수입부품검증방법(Import-Content Test)은 수입 사용가능한 부품과 재료의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며, 둘째로 현지 부품검증방법(Domestic-Content Test)은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진 최종 국가의 현지 부가가치의 최소비율을 설정한다. 셋째, 부품가격검증방법(Value-of-Parts-Test)은 원산지 부품이 전체 부품가격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부품가격기준 검증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이 방법은 현지 생산공정에서 조립비용과 간접비용(Overhead Cost)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부품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다소 불공정한 바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 검증 방법은 EC역내에서 45% 부가가치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조적인 검증으로서, TV, 라디오, 테이프 레코더 등 특정제품별 원산지 규정(Product-Specific Origin Regulation)과 EC 반덤핑 규정(Artical 13(10))에서 사용된다.

비율기준(Percentage Criterion)은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수입부품 혹은 현지부품 비율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만약 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경

우, 비특혜 원산지 규정하에서라면 최종 공정만으로 원산지를 부여 받을 수 없어 타국이 원산지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특혜 원산지 규정하에서는 어떠한 나라도 원산지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비율기준, 특히 현지부품 검증방법은 생산비용의 분석이 필요하기에 다음 도표에서와 같이 국별 비용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표2. 국별 부품비율 적용 실태

국 별	비특혜 원산지	특혜 원산지
미 국	N/A	Domestic Content : CTH or Domestic Content for U.S Canada FTA
E C	Technical or Domestic Content	Import Content
호 주	Domestic Content	Domestic Content
캐나다	Domestic Content	Import Content : for GSP less Developed Countries(LDC) : Domestic Content in other Cases
일 본	N/A	Import Content

주) N/A=Not Applicable

생산비용은(Production Cost)은 제조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조비용은 자재비용, 임금, 제조간접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재비용이란 부품(Parts, Components 등) 구입가격인데 비율기준(Percentage Criterion) 적용에서는 원산지 자재와 비원산지 자재간의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비율기준은 수입부품의 최고 허용한도나 현지부품의 최소 허용한도를 계산한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부품가격이 어느 수준(Ex-Work, FOB, CIF, Delivered)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정된 가격수준에 따라 수입비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만약 인도부조건(Delive-

red)에서 가격이 결정될 경우 비율기준에 충족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위의 대상 국가들은 FOB 혹은 CIF 가격에서 비원산지 부품가격을 결정한다. CIF 가격 설정의 경우는 공장에서 수입국 국경까지의 부품운송에 대한 경비를 비원산지 비용으로 취급하고, 수입국 국경 이후의 내륙운송비, 관세, 간접세 등과 같은 비용은 원산지 비용으로 취급하고, FOB 가격을 설정할 경우는 해상운송과 보험료를 원산지 비용으로 간주한다. 반면 원산지 부품가격은 일반적으로 Into-Factory(Delivered)가격을 근거로 결정된다.

표3. 비율계산시 사용되는 국별 기준가격

국 별	비특혜 원산지	특혜 원산지
미 국	N/A	Appraised Value of Merchandise as it enters the United States
E C	Ex-Works Price	Ex-Works Price
호 주	Factory Cost	Factory Cost
캐나다	Cost of Production	Ex-Factory Price for GSP less Developed Countries(LDC) : Cost of Production in other Cases
일 본	N/A	FOB Export Price

제조 간접비용은 생산에 필요한 간접노동비, 감독, 감가상각비, 로얄티, 임대, 전력, 유지·보수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및 생산과정과 관계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일반 간접비용은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Selling,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 SGA)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임원의 급료, 통신비, 역외운송, 보험, 법률 및 회계수수료 등 판매과정에 관계된 모두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SGA는 판매 및 환율변동과 관련한 금융비용도 포함한다. 이 모든 비용항목의 합

계에 이윤(Profit)이 추가되어 판매가격이 되는 것이다.

수입부품비율(Import Content)은 모든 비원산지 부품의 FOB 혹은 CIF 가격을 합계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으며 현지 부품 비율(Domestic Content)은 판매가격으로부터 비원산지 비용을 빼거나 현지의 부가가치를 합계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이 두 방법은 이론상 같은 결과를 갖지만, 실제적으로는 항상 같은 것만은 아니다.

비율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캐나다, 일본의 GSP 원산지 규정과 EC의 특혜원산지 규정은 수입부품의 최고 한도액을 설정한 수입부품비율규정(Import-Content Rule)을 사용하는 데 예를 들어, 수입부품 규정하의 40%는 현지부품비율검증(Domestic-Content Test)에서 60%에 해당하며, 그러므로 두가지 계산 방법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미국의 특혜원산지 규정, 호주 GSP 원산지 규정, EC, 호주, 캐나다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 등은 현지부품의 최저한도를 정한 현지부품비율규정(Domestic-Content Rule)에 근거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에서의 경우 사용된 모든 현지부품만 갖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GSP 수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두 계산방법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호주, 캐나다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서도 적용된다.

비율기준방법에서는 비율 계산시 판매가격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해당 국가들은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비율 계산시 공통분모로 사용한다.

EC는 공장도가격(Ex-Work Price)을 사용하는 데 이 가격은 제품이 공장에서 출하될 때의 가격으로 외부운송비가 제외된 것이다. 가령 판매조건이 U\$ 100에 CIF 30일이라면 이는 수출국 국내운임 뿐만 아니라 수입국 국경까지의 보험료 및 30일간의 신용비용(Credit Cost)등을 포함한 것인데, 이러한 비용들을 판

매가격(Sales Price)에서 제외하면 공장도(Ex-Work)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일본 GSP는 부분적으로 FOB 수출가격을 사용하는 데, FOB 수출가격은 공장도 가격에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따라서 판매가격은 판매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공장도 가격 혹은 FOB 가격에 일치하게 된다.(항상 그렇지 는 한다)

비율기준(Percentage Criterion)에서는 가격 구성 요소(분자)나 공통분모로 사용되는 기준 수치들이 5개국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더우기 1개국 내에서조차도 수입부품허용비율(Allowable Import Percentage)과 현지부품조달비율(Required Domestic Percentage)이 종종 다른 경우가 있다.

미국 특혜규정 하의 현지부품비율 계산에는 현지부품가격과 제품의 생산, 조립 등의 공정에 직접 관계된 비용들을 포함한다.

- I) 노무비(연금, 직무연수(OJT), 기술, 감독, 품질관리 비용)
- II) 형판(Die), 모우드 등 설비비용과 감가상각비
- III) 연구, 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설계비용
- IV) 시험, 검사 비용

따라서 미국은 현지 부품기준에 SGA비용과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통분모는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때 평가된 가격인데, 이 가격은 거래가격을 근거로 결정되며, 거래가격은 수입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에 구매자가 지불할 포장비, 판매수수료, 보조비, 로열티 등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CIF 비용과 수입 이후의 제반비용, 관세, 그밖의 연방세(Federal Tax)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지부품비율 계산시 현지부품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SGA와 이윤(Profit)을 포함한 일종의 수출가격이 공통분모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가격은 미국세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업자나 수출업자가 현지부품조달비율(Domestic-

Content Percentage)의 충족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EC의 공통분모는 도쿄컨벤션 Recommended Practice 5에서 채택된 공장도 가격(Ex-Work Price)을 사용한다. [Recommended Practice 5=수입자재는 통관가격(일반적으로 CIF 가격)에서, 제품은 공장도 가격 혹은 수출가격에서 평가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공장도 가격이 재료비와 더불어 직접 노동비용, 생산간접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산간접비용은 생산단위의 순SGA, 로열티, 포장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

EC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세번 변경기준(CTH)을 보완하여 수입부품 기준검증(Import-Content Test)을 자주 사용하나,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는 현지부품 기준이 EC의 수입부품 기준검증에서의 수입부품 비율은 EC 현지부품 기준검증에서의 현지부품 조달율과 대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60%의 현지부품은 40%의 수입부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호주의 원산지 규정은 공정비용(Factory or Works Cost)으로 계산되는 별개의 현지부품 비율기준 방법을 사용하며, 현지부품에는 현지 구입한 원산자재비용(원자재관련 내국세는 제외)과 임금, 공장 간접비용 등은 포함하고, SGA와 이윤(Profit)은 제외한다.

캐나다의 비특혜 특혜원산지 규정과 일부

참고로 현지부품 기준가격은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부품비용을 삭감하여 계산한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서는 공장도 가격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EC의 특혜 원산지 규정에서 공장도 가격은 최종공정을 수행한 생산업자가 제품을 구입한 가격이며, 이 가격은 동생산자가 가공을 위해 사용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며,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제외한다.

특혜원산지 규정은 전체 생산비중 50%의 현지부품 비율이 필요하다. 공통분모는 원산지, 비원산지 부품비용(내국세, 관세 제외), 임금, 공장 간접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윤, 수출포장비, 로열티, 보험, 수송비, 관세 및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현지부품 비율은 비원산부품 가격을 제외한 상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GSP 원산지 규정은 부분적으로 EC의 특혜 원산지 규정과 매우 유사하게 수입부품 기준 검증을 사용한다.(그러나 공통분모는 공장도가격이 아니라 FOB 수출가격임)

“표 4”는 해당 5개국의 현지부품 예산요소 항목에 관한 실례를 들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현지부품 비율의 계산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표4는 생략. 본회 국제부 문>

공통분모는 앞에서 언급한 항목들과 비원산지 부품에 대한 세관가격을 합하여 계산한다. 도표에 있는 비용 항목들을 공통분모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현지부품비율을 계산한다. 이는 같은 비용항목을 갖고도 국별로 서로 다른 현지 부품비율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한다면(Ceteris Paribus), EC와 일본의 현지부품 계산방법은 다른 국들보다 좀 더 개방적(Liberal)이며 또한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SGA와 이윤을 현지 가치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가장 논리적이다.

일본의 방법은 2가지 점에서 EC보다 약간 더 호혜적인데 첫째, 비원산지 부품 가격을 CIF 기준이 아니라 FOB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일본은 수입부품에 대한 CIF 비용을 현지원산지 비용으로 계산한다. 둘째, 일본의 공통 분모는 상품의 공장도 가격이 아니라 FOB 가격이다.

비록 FOB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높을지라도 수출국에서의 내륙 운송료와 보험료가 현지원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지 부

품비율도 역시 높아지게 되며 또한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항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회사일수록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적항이 부산이라면, 대구에 위치한 회사보다는 인천에 위치한 회사가 보다 더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천-부산간 수송비용이 대구-부산간 수송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조립라인 시점에서 제외되었던 현지부가비용(Local Cost-Added)으로 도출되며 이것을 현지 SGA와 이윤을 포함함으로써 상승된 수출가격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결국 현지 부품 비율을 축소시킨다.

호주와 캐나다 역시도 조립비용을 계산에 넣고 Factory Price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한 비율기준의 불리한점은 해당 국가들의 적용방법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 이외에도 생산성이 높거나, 비용이 낮게 드는 공장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라 TV 생산업자는 45%의 현지부품 비율을 태국에서보다 EC에서 이루기가 수월할 것이다. 더우기 현지부품 및 수입부품비율계산 결과는 세계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및 환율변동으로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현지부품비율 계산방법은 관련 행정실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며,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지실사(On-The-Spot-Visit)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부품 기준검증(Import-Content Test)이 현지부품 기준검증(Domestic-Content Test)보다 적용하기가 쉽고 수입국 조사관들의 재량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선호되고 있다.

2) 세번 변경검증(Change-in-Tariff-Heading Test ; CTH)

CTH 검증은 비원산지 부품에 해당하던 HS

(Harmonized System)세번이 생산공정 결과 별도의 세번(보통 4자리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EC의 특혜원산지 규정과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1차 주요검증 방법으로 사용된다.

일본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도 대체적으로 CTH 검증을 이용하고 있다. CTH의 이점은 개념의 단순성, 적용의 용이함, 공정성 등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HS 세번을 채택하고 CTH 검증 방법을 사용할 경우 통일성 있는 원산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님. 실제로 US-Canada FTA하에서 CTH는 2~8자리까지의 변화가 다양함)

미국의 발의로 일찌기 UR협상에서 결정되었으며, 관세협력위원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에 위임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통일작업은 원칙적으로 HS CTH 검증에 근거하기로 되어 있다.

HS분류방식은 상품분류와 통계 등 이중목적으로 고안되었기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항상 적절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입국 행정실무자들에 의해 일찌기 인식되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예외 품목리스트를 갖게 되었다.

- i) 세번변경(CTH)보다는 현지부품이나 수입부품 비율조건이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더 적절하거나, 특정생산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최종생산 공정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원자재 조달이 요구되어지는 품목
- ii) CTH변화가 없더라도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생산공정을 가진 품목

CTH의 또하나의 단점은 수출국 행정실무자, 수출업자, 생산업자 모두에게 완제품 및 원재료와 관련된 HS세번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GSP 운용에 대한 UNCTAD협약에서 종종 논의되고 있다.

3) 기술적 검증(Technical Test)

기술적 검증은 원산지 결정 여부를 위한 일련의 생산공정이나 부품 수급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검증은 미국의 특혜 및 비특혜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혜규정에서는 현지부품 기준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EC도 대부분의 특정상품 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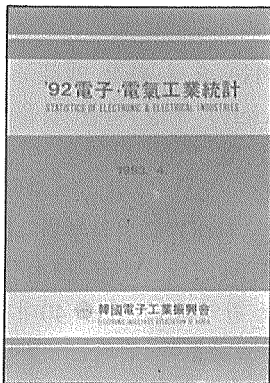
기술적 검증의 장점은 세가지 검증 방법중에서 특정 현안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도체의 확산공정(Diffusion)이 일어나는 국가가 원산지라는 미국과 EC의 결정이 보여 주듯이 현지 이해관계(Domestic Interest)에 따라 매우 쉽사리 남용될 수가 있다. 더우기, 무수히 많은 제품에 대한 모든 기술적 검증방법을 고안해 낸다는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 세번째로, 제3국에서 이루어진 특정생산 공정에 대한 정보를 검증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기술적 검증(Negative Technical Test)의 단점은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생산공정 혹은 부품수급 과정의 정의만을 규정하고 여타 공정은 되는지 안되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EC의 복사기(Photocopier; 일본의 Ricoh社)에 대한 특정 상품원산지 규정(Product-Specific Origin Regulation)은 좋은 예가 된다.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초안(Draft Agreement; GATT)에서는 네거티브 기술적 검증 사용을 금하고 있는 한편, 포지티브 검증(Positive Test)에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그리고 포지티브 검증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조항중 두번째 것은 수입국에서 상당부분 네거티브 기술검증에 의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IAK 신간안내



본회에서는 지난 4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92년 수급실적과 함께 수출입에 대한 국가별·품목별 통계가 수록된 「'92 電子·電氣工業統計」를 발행하였다. 특히 전자산업의 동향과 HS분류에 의한 세부 수출입 실적이 상세히 실려있어 산업조사 및 기획업무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 판형 : 5×7배판/면수 : 566면

내용 : 본회 조사부 조사통계과
554-4286(直)

• 문의처

배포 : 본회 자료실 553-0941(交) 43,
562-5054(直)

한 국 전 자 공 업 진 흥 회